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건설도시국 자체감사 —

2026. 7.



■ 처분요구일람표

1.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이행(시정)	1
2.	☞☞☞ 공사비 과다계상(시정)	3
3.	&&& 운영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5
4.	※※※ CCTV 운영·관리 소홀(시정)	10
5.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주의)	1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상북도 ☆☆☆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는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¹⁾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실시설계용역의 평가 시기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2억3천만 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용역평가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한 용역 평가를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 하지 않았다.

1) 2억 3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평가 미시행 현황 “생략”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사비 과다 계상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상북도 ○○○과에서는 “♡♡♡ 공사” 사업을 2024.06.26. ###과 계약 하여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공사 사업 현황 “생략”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맨암거 설치에 대한 설계가 75m 중복 계상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맨암거 설치 중복 계상 현황 “생략”

그 결과, 불필요한 공사금액 2,420천 원(제경비 포함)이 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420,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운영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위탁사업비 운영 현황 “생략”

1. 민간위탁 추진 절차 부적정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수탁기관 명목의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0조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계약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운영과 관련하여 @@@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 위탁계약 현황 “생략”

2. 민간위탁 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가. 수탁기관 지도·감독 업무 소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지사는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에서 이러한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편람(지침)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의 부서에서는 ‘경상북도 &&& 운영지침’을 작성·비치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작성하여 비치했을 뿐 아니라, [표 3]과 같이 조례와 상이하게 운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지적 및 시정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 내부지침(편람)에 기재된 내용 “생략”

나. &&& 반납 물품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

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민간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과에서는 ‘&&& 운영’의 위탁사업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제4조에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도”에서 장비,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도”의 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을 “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 즉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위탁사업비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위탁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받아 물품운용관으로서 자산을 등록하여 분실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센터의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의 부서에서는 당시 수탁기관이었던 ‘§ § §’에서 계약 만료로 반납한 물품 10개를 2021. 1. 13.에 인계·인수 받아 현 수탁기관인 ‘@@@’에 이 중 3개 물품을 인계·인수하였지만 수탁기관에서는 이를 물품대장에 등록·관리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이 되어서야 위치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 § §’ 로부터 인계받은 노트북 3대 등을 수탁기관에 인계하지 않은 채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트북 1대 등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표 4]와 같이 &&&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물품 현황 “생략”

그 결과,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시켰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자]

- | | | | | |
|---|-------|-------|-------|-------|
| ① | ***** | ***** | * * * | [주 의] |
| ② | ***** | ***** | * * * | [주 의]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CCTV 운영·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상북도 □□□과에서는 ‘※※※’ 내 시설물 관리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5개소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 권한의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리적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을 운영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2항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할 때는 파기 일시(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확인 시기)와 담당자 성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적절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 CCTV 운영 시 상기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는 아래 [표]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미작성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등 ※※※ CCTV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 CCTV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 “생략”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② CCTV 열람 공간 분리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공사²⁾는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치기준(안),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상기 법령과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2)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런데, 발주청인 경상북도 ○○○과,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4건,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건을 추진하면서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공고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사업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